

# 고 성 군 세 감 면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의 번 호	428
-------------	-----

제출 연월일 : 1997. 6. 16.

제출자 : 고 성 군 수

## 1. 개정사유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농어촌주택개량동의 감면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  
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10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할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함(안제11조제2항)
-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를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안제19조의2)

## 3. 참고사항

- 도세정13400 - 27 ('97. 1. 08) 호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 통보」
- 도세정13400 - 42 ('97. 1. 13) 호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 중수정(안) 통보」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 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 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 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에 대 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 제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p> <p>①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부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_____</p> <p>_____</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 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 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 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 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p> <p>2. (생략)</p> <p>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p> <p>4. (생략)</p>	<p>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p> <p>-----</p> <p>승인을 받은자</p> <p>2. (현행과 같음)</p> <p>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p> <p>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9조의2(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p> <p>1.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p> <p>2. 시장재개발, 재건축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자</p>